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98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자 함(안 부칙 제1조 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09.11(수)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